

# 업 무 방 법 서

제정 : 2000.03.06.  
개정 : 2001.03.21.(1)  
개정 : 2001.11.26.(2)  
개정 : 2003.02.19.(3)  
개정 : 2004.03.09.(4)  
개정 : 2005.05.06.(5)  
개정 : 2005.09.08.(6)  
전문개정 : 2007.12.11.(7)  
개정 : 2008.02.25.(8)  
개정 : 2008.04.08.(9)  
개정 : 2009.04.03.(10)  
개정 : 2009.04.24.(11)  
개정 : 2009.11.02.(12)  
개정 : 2010.02.02.(13)  
개정 : 2011.04.01.(14)  
개정 : 2013.01.31.(14)  
개정 : 2014.01.27.(17)  
개정 : 2014.05.26.(18)  
개정 : 2014.12.30.(19)  
개정 : 2015.06.01.(20)  
개정 : 2017.01.04.(21)  
개정 : 2017.05.12.(22)  
개정 : 2018.01.04.(23)  
개정 : 2018.12.28.(24)  
개정 : 2020.03.18.(25)  
개정 : 2021.07.12.(26)  
개정 : 2022.10.07.(27)  
개정 : 2023.03.15.(28)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기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각목의 채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함을 말한다.(개정 2017.01.04.)

2.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4.01.27., 2017.01.04.)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4.01.27., 2017.01.04., 2021.7.12.)
4. “소기업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09.11.02., 2014.01.27., 2017.01.04., 2021.7.12.)
5. “금융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9.11.02., 2014.01.27.)
6. “비은행금융회사”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02., 2014.01.27.)
7. “채권자”라 함은 재단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보증회수보증”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보증을 말한다.(개정 2014.01.27.)
9. “회생지원보증”이라 함은 재단 채무관계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보증을 말한다.(개정 2014.01.27.)
10. “재보증”이라 함은 재단의 보증채무(이하 “원 보증”이라 한다) 이행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보증기관이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1. “재보증기관”이라 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04.03., 2013.01.31., 2017.01.04.)
12. “브릿지보증”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 중이나 폐업한 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하는 개인신용보증을 말한다. (신설 2021.7.12.)

**제3조(업무방법서의 변경)** 이 업무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주광역시장에게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31., 2018.01.04.)

**제4조(업무방법서 이외의 규정)** 재단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 업무방법서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01.04.)

## 제 2 장 신용보증업무

**제5조(보증의 종류)** ① 재단이 취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기업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대출보증”이라 한다)(개정 2014.01.27.)
2.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및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 포함) ,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지급보증의 보증” 이라 한다)(개정 2013.01.31., 2014.01.27.)
3. 소기업 등이 비은행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비은행대출보증”이라 한다)(개정 2014.01.27.)

4. 소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증(이하“납세보증”이라 한다)

5.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유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 (이하“어음보증”이라 한다)

6. 소기업 등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부 장관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채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개정 2018.01.04.)

7. 소기업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이하“시설대여업자”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시설대여보증”이라 한다)

8. 소기업 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상거래 담보보증”이라 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의 규모,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보증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1.04.)

③ (삭제 2014.01.27.)

**제6조(보증의 방법)** ① 보증은 보증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비은행대출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시설대여보증, 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한다.

2.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어음 면에 보증사실을 표시한다.

② 보증은 보증대상 채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과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보증기간)** ① 개별보증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기한 이내로 하되 주채무의 기한이 연장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1.31.)

1. (삭제 2013.01.31.)

2. (삭제 2013.01.31.)

3. (삭제 2013.01.31.)

4. (삭제 2013.01.31.)

5. (삭제 2013.01.31.)

6. (삭제 2013.01.31.)

7. (삭제 2013.01.31.)

8. (삭제 2013.01.31.)

② 근보증의 보증기간은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그 용자기한이 연장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1.31.)

**제8조(우선적 보증)**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재해구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개정 2013.01.31.)
2.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3.01.31., 2018.01.04.)

**제9조(보증료 등)** ①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개정 2014.01.27., 2017.01.04.)

1.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소기업 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율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 (개정 2017.01.04.)
2. “추가보증료”는 기업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 (개정 2013.01.31., 2014.01.27., 2017.01.04.)
- 3.“연체보증료”는 보증 받은 기업이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 (개정 2017.01.04.)

②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3.01.31., 2014.01.27.)

③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01.27., 2014.07.01.)

1. 신용보증서 발급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한다.(개정 2014.07.01.)
2.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13.01.31., 2014.07.01.)
  - 가.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나. 신용보증서 발급일과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다만,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07.01.)

**제10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수납한다.

**제11조(같은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한도)** 같은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 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03., 2013.01.31., 2021.7.12., 2023.03.15.)

**제11조의2(부분보증)** ① 재단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분보증으로 융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증비율은 채권자의 출연대상기관 여부, 금전채무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신설 2013.01.31.) (개정 2014.0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부분보증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보증은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4.01.27.)

**제12조(보증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개정 2010.02.02., 2011.10.13., 2013.01.31. 2015.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3. (삭제 2015.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보증심사위원회가 신용보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01.04.)

1. 기보증회수보증 (개정 2014.01.27., 2018.12.28.)

2.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포함) 등 경영정상화방안이 확정된 기업중 법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유예한 기업에 대한 보증 (개정 2013.1.31., 2014.01.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중소기업부 장관의 지침이 있거나, 이사장이 정한 그 밖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신설 2010.2.2.) (개정 2014.01.27., 2014.05.26., 2017.01.04., 2018.01.04., 2018.12.28.)

1. 회생지원보증

2. 중소기업부장관이 통지하는 업무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는 보증(특례보증 및 그 밖의 보증운용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특례보증 등”이라 한다)

**제13조(보증제한기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4.08., 2013.01.31., 2015.1.1.)

1. 휴업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포함)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 기업(이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라 한다.) (개정 2013.01.31., 2014.01.27., 2017.01.0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15.1.1.)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라.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마.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  
 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4.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  
 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개정  
 2013.01.31.)
  5.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개정  
 2010.02.02., 2013.01.31.)
  6.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 보증제한업종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보  
 증할 수 있다.(개정 2014.01.27.)
- ③ 특례보증은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취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증할 수 있다.(신설 2010.02.02.) (개정 2014.01.27., 2014.05.26.)

#### **제14조 (삭제 2017.1.4.)**

**제15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  
 에는 법령 및 약관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다.

1. 대출보증 및 비은행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개정 2014.01.27.)
2. 지급보증의 보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 포함), 수협(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포함)등이 대지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개정 2014.01.27.)
3. 납세보증의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에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4.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5. 시설대여 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6. 이행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정기한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의 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7. 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한이 경과하거나, 이사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27., 2022.10.07.)

1. 파산 또는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개정 2014.01.27.)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포함) 개시 신청이  
 있는 때(개정 2013.01.31., 2014.01.27.)
4. 당좌부도발생,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서 조업을 중단한 때
5. 기타 기업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보증채무의 조속한 이행으로 재단에 실익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22.10.07.)

③ 제1항의 경우로서 심사결과 청구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행금액의 감액 또는 이행거절의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1.27.)

④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당해어음을 돌려받고 보증채무를 이행한다.(개정 2014.01.27.)

⑤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및 비은행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외에 다음 각 호의 이자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종속채무로 이행한다.

1. 대출보증 및 비은행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이행 기한이 도래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일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 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다만,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인 경우 90일 이내의 이자액

2. 지급보증의 보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일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율 (보증채무 이행 전일 증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개정 2014.01.27.)

**제16조(구상권의 행사)**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01.27.)

1. 소기업 등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 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재단이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소기업 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1.27.)

**제17조(채무의 감면)** ①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17.05.12., 2018.01.04.)

1. (삭제 2018.01.04.)

2. (삭제 2018.01.04.)

3. (삭제 2018.01.04.)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05.12., 2018.01.0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안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포함)인가(개정 2018.01.04.)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회사 간 협약에 따른 채권재조정안의 확정(개정 2018.01.04.)

3.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안의

확정(개정 2018.01.04.)

**제18조(구상채권상각)** 재단은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 중 회수할 수 없다고 재단의 이사회 의결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중앙회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한다.(개정 2008.02.25., 2009.04.03., 2009.11.02., 2014.01.27.)

**제18조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 2에 의하여 구상채권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하고, 재보증 가입된 구상채권은 재보증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매각하도록 한다. (신설 2009.04.03.) (개정2013.01.31., 2018.01.04.)

1. (삭제 2013.01.31.)

2. (삭제 2013.01.31.)

3. (삭제 2013.01.31.)

### **제18조의3(잠정조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10.07.)

## **제 3 장 재 보 증**

**제19조(재보증)** ① 재단은 재보증기관과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의 범위, 재보증요건, 재보증료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보증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4.01.27.)

② 재보증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보증기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재보증계약에 의한다(개정 2017.01.0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가 전액 손실을 보전하는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재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0.03.18.)

## **제 4 장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제20조(신용조사)** ① 재단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상황, 시장여건 등의 신용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1.04.)

② 재단은 소기업 등의 대한 신용조사를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사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소기업 등의 신용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1.27., 2017.01.04.)

③ 재단이 제2항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사 전문기관에게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조사와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01.27.)

**제21조(신용정보업무)** 재단은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보이용자가 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는 기준 등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7.)

## 제 5 장 보증심사위원회

**제22조(보증심사위원회 구성등)** ① 재단은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1.27., 2017.01.04.)  
② 제1항의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1.04.)

## 제 6 장 경영지도 업무

**제23조(경영지도)** 재단은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재단은 경영지도방법, 기간,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지도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1.04.)

## 제 7 장 브릿지 보증

**제25조(보증대상)** 재단이 신용보증 중이나 폐업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에게 브릿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26조(업무처리방법)** 브릿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1.7.1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보증업체에 대한 업무)**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당시 성립된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 등은 재단이 승계한다. 이때 공부상 사단법인 광주신용보증 조합의 명의로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업무방법서의 승인 이전에 시행한 보증에 대하여는 동 방법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

이 업무방법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업무방법서의 승인 이전에 시행한 보증에 대하여는 동방법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 칙(8)**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의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지침(2009.04.17)」에 따라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업무방법서 제19조(재보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2)**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주는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과 동 특례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이나, 동 특례보증 관련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회생지원보증은 이 업무방법서 제19조(재보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업무방법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위 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은 이 업무방법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부 칙(16)**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보증료 등)제3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4.12.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이 업무방법서는 시행일 이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1)**

이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승인 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이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승인 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하는 날(2017. 5.1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2018.12.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5)**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2020.03.1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6)**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1.7.1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7)**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2022.10.0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8)**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2023.03.15.)로부터 시행한다.